

1. 개정이유

서해5도는 조업한계선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 잦은 조업 통제로 어업인 조업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어장을 확대하여 어업인 조업 여건을 개선하고,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으로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해5도 어장 신설 및 확대(안 제5조제1항, 별표3)

- E어장을 144km² 신설하고, 연평어장을 25km²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4~6월, 9~11월)에만 조업

나.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등 조업 조건(안 제5조제1항, 별표3)

- 국가 및 지자체 지도선(행정선 포함) 상시 배치로 조업선 안전관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8 ~ 3. 18.) 예정

해양수산부령 제 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제5조제1항 관련)

어장의 명칭	조업구역, 조업기간 및 조건
저도어장	1. 조업 구역 등 강원도 고성군 저도 주위 해역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강원도 고성군 어선만 조업(근해트롤어업·근해통발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마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 가. 북위 38도 34분 09.68초와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과의 교차점 나. 북위 38도 34분 09.69초, 동경 128도 30분 06.89초 다. 북위 38도 33분 09.69초, 동경 128도 30분 06.89초 라. 북위 38도 33분 09.69초와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과의 교차점 마. 북위 38도 34분 09.68초, 동경 128도 26분 08.92초 북위 38도 34분 09.68초, 동경 128도 26분 28.92초 북위 38도 33분 09.69초, 동경 128도 26분 08.92초 북위 38도 33분 09.69초, 동경 128도 26분 28.92초 2. 조업 기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조업 시간: 주간
동해 북방어장	1. 조업 구역 등 동해조업한계선 이북 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강원도 어선만 조업(근해트롤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8도 35분 09.68초, 동경 128도 31분 06.89초 나. 북위 38도 35분 09.69초, 동경 129도 08분 36.69초 다. 북위 38도 33분 09.71초, 동경 129도 08분 36.69초

	라. 북위 38도 33분 09.71초, 동경 128도 31분 06.89초 2. 조업 기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 조업 시간: 주간
연평도 주변어장	1. 조업 구역 등 대연평도 주위의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다만, 거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너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및 더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 가. 대연평도 최동단 나. 북위 37도 38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25초 다. 북위 37도 38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58초 라. 북위 37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54분 30초 마.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1분 25초 바.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 사. 북위 37도 25분 10.10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 아. 북위 37도 25분 09초, 동경 125도 10분 04초 자. 북위 37도 26분 39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차. 북위 37도 29분 21초, 동경 125도 22분 30초 카. 북위 37도 30분 10.06초, 동경 125도 24분 52.95초 타. 북위 37도 32분 35.04초, 동경 125도 29분 52.92초 파. 북위 37도 38분 00.01초, 동경 125도 39분 57.86초 하. 대연평도 최서단 거. 북위 37도 34분 23.64초, 동경 125도 33분 15.00초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33분 15.00초 북위 37도 34분 45.13초, 동경 125도 33분 55.00초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33분 55.00초 너. 북위 37도 37분 01.30초, 동경 125도 38분 08.54초 북위 37도 37분 21.00초, 동경 125도 41분 33.00초 북위 37도 38분 37.45초, 동경 125도 44분 04.49초 북위 37도 38분 22.00초, 동경 125도 44분 12.86초

북위 37도 37분 03.00초,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5분 27.60,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5분 27.60, 동경 125도 45분 00.00초
 북위 37도 36분 44, 동경 125도 47분 46초
 북위 37도 36분 36, 동경 125도 47분 57초
 북위 37도 35분 15.00, 동경 125도 45분 00.00초
 북위 37도 35분 15.00,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3분 30.00,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3분 30.00, 동경 125도 41분 18.00초
 북위 37도 37분 00.00, 동경 125도 41분 18.00초
 북위 37도 36분 37.39, 동경 125도 37분 24.00초
 더. 북위 37도 29분 35, 동경 125도 23분 10초
 북위 37도 25분 11, 동경 125도 23분 10초
 북위 37도 25분 11, 동경 125도 22분 30초
 북위 37도 29분 21, 동경 125도 22분 30초

2. 조업 기간: 연중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 1)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연평도·소연평도 어선만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호제1항 및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제외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할 수 있으며, 어업인은 국가어업지도선, 웅진군 어업지도선 및 행정선 인솔하에 조업하여야 한다.

가.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나. 북위 37도 26분 39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다. 북위 37도 29분 21초, 동경 125도 22분 30초

- 2)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연평도 어선만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로 하여

	조업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35분 20초, 동경 125도 37분 50초 나. 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37분 50초 다. 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46분 30초 라. 북위 37도 35분 20초, 동경 125도 46분 30초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어장	1. 조업 구역 백령도, 대청도 및 소청도 주위의 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가.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5분 53.21초 나. 북위 37도 59분 39.84초, 동경 124도 35분 53.20초 다. 북위 37도 59분 39.84초, 동경 124도 39분 53.18초 라. 북위 37도 59분 09.84초, 동경 124도 39분 53.18초 마. 북위 37도 59분 09.84초, 동경 124도 39분 53.18초에서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바. 소청도의 최동단 정동해상 1마일의 점 사. 북위 37도 43분 09.96초, 동경 124도 47분 20.15초 아. 북위 37도 43분 09.95초, 동경 124도 43분 33.17초 자.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1분 13.23초 2. 조업 기간: 연중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A어장	1. 조업 구역 등 백령도 서방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백령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59분 39.84초, 동경 124도 35분 53.20초 나. 북위 37도 59분 39.84초, 동경 124도 31분 13.23초 다.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1분 13.23초 라.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5분 53.21초 2. 조업 기간: 연중(월 15일 이내)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웅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솔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B어장	1. 조업 구역 등 소청도 남방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대청도, 소청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43분 09.96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나. 북위 37도 43분 09.96초, 동경 124도 43분 33.17초 다.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24도 43분 33.17초 라.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2. 조업 기간: 연중(월 15일 이내)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웅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솔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C어장	1. 조업 구역 등 백령도 서방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59분 40초, 동경 124도 31분 13.23초 나. 북위 37도 55분 09.86초, 동경 124도 31분 13.23초 다.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19분 53.30초 라. 북위 37도 59분 40초, 동경 124도 19분 53.30초 2. 조업 기간: 연중(월 15일 이내)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웅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솔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D어장	1. 조업 구역 등 소청도 남방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나.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다.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2. 조업 기간: 연중(월 15일 이내) 3. 조업 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웅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술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E어장	1. 조업 구역 등 소청도 남방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나. 북위 37도 35분 00.00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다. 북위 37도 43분 09.96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라. 북위 37도 31분 05초, 동경 124도 56분 54초 2. 조업기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호제1항 및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제외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 조업시간 :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 그 밖의 조업 조건 : 다음 각 목의 점을 이은 기점선을 기준으로 북쪽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웅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술하에 조업을 해야하며, 남쪽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국가어업지도선 인술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가. 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나. 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24도 54분 10초
강화도 서방어장	1. 조업 구역 서해 조업한계선과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가.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2분 52.74초

	나. 북위 37도 32분 40.05초, 동경 125도 58분 22.76초 다.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8분 22.76초 2. 조업 기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 조업 시간: 주간
분지골어장	1. 조업 구역 등 서해 조업한계선과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주문도·불음도·아차도 및 서검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불음도 최남단 나.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9분 31.70초 2. 조업 기간: 연중 3. 조업 시간: 주간 4. 그 밖의 조업 조건: 강화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솔하에 조업을 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어장의 명칭	조업구역, 조업기간 및 조건	어장의 명칭	조업구역, 조업기간 및 조건
저도 어장	(생략)	저도 어장	(현행과 같음)
동해 북방 어장	(생략)	동해 북방 어장	(현행과 같음)
연평도 주변 어장	1. 조업 구역 등 대연평도 주위의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다만, 파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하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및 거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 가. ~ 아. (생략) 자. 북위 37도 30분 10.06초, 동경 125도 24분 52.95초 (신설) 차. 북위 37도 32분 35.04초, 동경 125도 29분 52.92초 (신설) 카. 북위 37도 38분 00.01초, 동경 125도 39분 57.86초 타. 대연평도 최서단 파. 북위 37도 34분 23.64초, 동경 125도 33분 15.00초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33분 15.00초 북위 37도 34분 45.13초, 동경 125도 33분 55.00초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33분 55.00초 하. 북위 37도 37분 01.30초, 동경 125도 38분 08.54초 북위 37도 37분 21.00초, 동경 125도 41분 33.00초 북위 37도 38분 37.45초, 동경 125도 44분 04.49초 북위 37도 38분 22.00초, 동경 125도 44분 12.86초 북위 37도 37분 03.00초,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5분 27.60,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5분 27.60, 동경 125도 45분 00.00초 북위 37도 36분 44, 동경 125도 47분 46초 북위 37도 36분 36, 동경 125도 47분 57초 북위 37도 35분 15.00, 동경 125도 45분 00.00초 북위 37도 35분 15.00,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3분 30.00,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3분 30.00, 동경 125도 41분 18.00초 북위 37도 37분 00.00, 동경 125도 41분 18.00초 북위 37도 36분 37.39, 동경 125도 37분 24.00초 거. 북위 37도 29분 35, 동경 125도 23분 10초 북위 37도 25분 11, 동경 125도 23분 10초 북위 37도 25분 11, 동경 125도 22분 30초 북위 37도 29분 21, 동경 125도 22분 30초	연평도 주변 어장	1. 조업 구역 등 대연평도 주위의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다만, 거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너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 및 더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북위 37도 26분 39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차. 북위 37도 29분 21초, 동경 125도 22분 30초 카. 북위 37도 30분 10.06초, 동경 125도 24분 52.95초 타. 북위 37도 32분 35.04초, 동경 125도 29분 52.92초 파. 북위 37도 38분 00.01초, 동경 125도 39분 57.86초 하. 대연평도 최서단 거. 북위 37도 34분 23.64초, 동경 125도 33분 15.00초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33분 15.00초 북위 37도 34분 45.13초, 동경 125도 33분 55.00초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33분 55.00초 너. 북위 37도 37분 01.30초, 동경 125도 38분 08.54초 북위 37도 37분 21.00초, 동경 125도 41분 33.00초 북위 37도 38분 37.45초, 동경 125도 44분 04.49초 북위 37도 38분 22.00초, 동경 125도 44분 12.86초 북위 37도 37분 03.00초,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5분 27.60,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5분 27.60, 동경 125도 45분 00.00초 북위 37도 36분 44, 동경 125도 47분 46초 북위 37도 36분 36, 동경 125도 47분 57초 북위 37도 35분 15.00, 동경 125도 45분 00.00초 북위 37도 35분 15.00,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3분 30.00, 동경 125도 41분 39.00초 북위 37도 33분 30.00, 동경 125도 41분 18.00초 북위 37도 37분 00.00, 동경 125도 41분 18.00초 북위 37도 36분 37.39, 동경 125도 37분 24.00초 더. 북위 37도 29분 35, 동경 125도 23분 10초 북위 37도 25분 11, 동경 125도 23분 10초 북위 37도 25분 11, 동경 125도 22분 30초 북위 37도 29분 21, 동경 125도 22분 30초

	2. (생략) 3. (생략) 4. 그 밖의 조업 조건 : (신설)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연평도 어선만 4월 1일부터 5월 30 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 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로 하여 조업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35분 20초, 동경 125도 37분 50초 나. 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37분 50초 다. 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46분 30초 라. 북위 37도 35분 20초, 동경 125도 46분 30초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조업 조건 1)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 쪽 해역에서는 연평도·소연평도 어선만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호제1항 및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제외한 4월 1일부 터 11월 30일까지 조업할 수 있으며, 어업인 은 국가어업지도선, 웅진군 어업지도선 및 행정선 인술하에 조업하여야 한다. 가.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나. 북위 37도 26분 39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다. 북위 37도 29분 21초, 동경 125도 22분 30초 2)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연평도 어선만 4월 1일부터 5월 30 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 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로 하여 조업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35분 20초, 동경 125도 37분 50초 나. 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37분 50초 다. 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46분 30초 라. 북위 37도 35분 20초, 동경 125도 46분 30초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변0장	(생략)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변0장	(현행과 같음)
A어장	(생략)	A어장	(현행과 같음)
B어장	(생략)	B어장	(현행과 같음)
C어장	(생략)	C어장	(현행과 같음)
D어장	(생략)	D어장	(현행과 같음)
(신설)	1. (신설) 2. (신설) 3. (신설) 4. (신설)	E어장	1. 조업 구역 등 소청도 남방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안쪽 해역에서는 백령도·대청도· 소청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 37도 25분 10.09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나. 북위 37도 35분 00.00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다. 북위 37도 43분 09.96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라. 북위 37도 31분 05초, 동경 124도 56분 54초 2. 조업기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호 제1항 및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제외한 4 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 조업시간 :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그 밖의 조업 조건 : 다음 각 목의 점을 이 은 기점선을 기준으로 북쪽해역에서 조업 하는 어선은 <u>웅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술하에 조업을 해야하며, 남쪽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국가어업지도 선 인술하에 조업을 해야한다.</u> 가. 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24도 48분 30초 나. 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24도 54분 10초
--	--	--	---